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19호 2020. 5. 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79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5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39호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446호 2020~202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 14
- 삼척시 공고 제44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7
- 삼척시 공고 제450호 제21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20
- 삼척시 공고 제462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 21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0 - 7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21-274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5.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171-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21-274	20200501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 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리 80-1, 80-2, 80-3, 252-1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42	20200501		20090626	문화재(영경묘) 명칭 활용
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23-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길 47-11	20200501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주소		도로명주소	코시일	사유	도로명 교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계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171-1	3건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21-274	20200501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사전리 80-1, 80-2, 80-3, 262-1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42	20200501		20090626	문화재(영경묘) 명칭 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23-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길 47-11	20200501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고시 제2020-79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삼척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9.

삼척시장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730,370,783	715,176,378	15,194,405	2.1%
일	반 회 계	679,207,364	664,012,959	15,194,405	2.3%
특	별 회 계	51,163,419	51,163,419	-	-
	상 수 도 사 업	27,128,495	27,128,495	-	-
	하 수 도 사 업	6,285,148	6,285,148	-	-
	주 택 사 업	65,684	65,684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749,565	9,749,565	-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937,000	937,000	-	-
	의료급여기금	1,238,195	1,238,195	-	-
	자활기금운영	1,390,460	1,390,460	-	-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183,000	183,000	-	-
	주 차 장	543,570	543,570	-	-
	임대아파트관리운영	3,642,302	3,642,302	-	-

삼척시 공고 제2020-439호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삼척시장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0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 2) 전화 : 033-570-3439
- 3) 팩스 : 033-570-3133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삼척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 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직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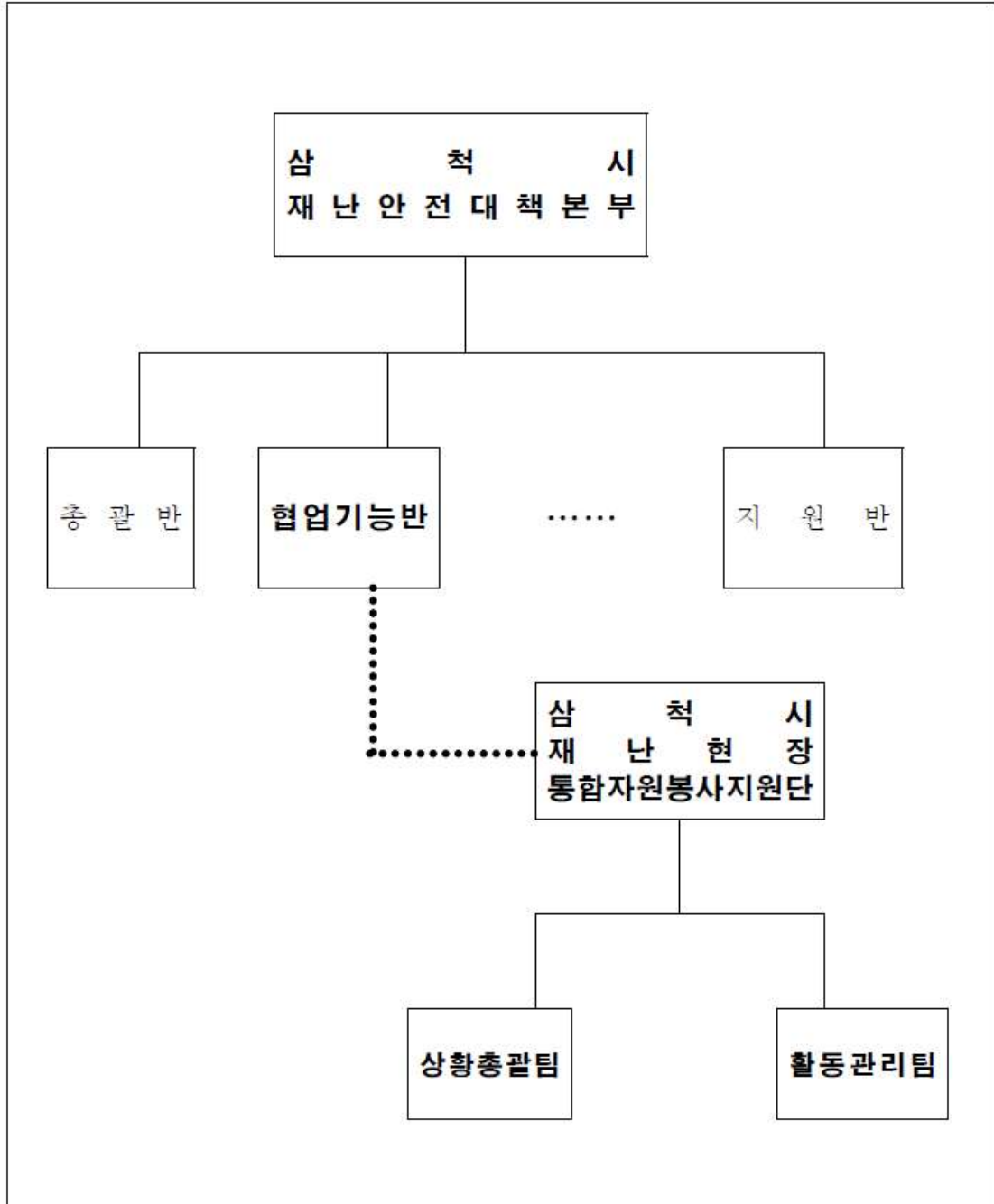
②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별표 1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직무 분담 (제6조제2항 관련)

구분	직위	담당 사무
단장	공무원 (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행·재정적 지원 총괄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리·지원 총괄
상황총괄팀	시 자원봉사 업무담당 팀장	▶ 자원봉사 행·재정적 지원·관리 총괄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총괄 ▶ 유관 기관·단체(타지자체 포함) 현장활동 지원 연계
	시 자원봉사 업무담당 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 지원·관리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유관 기관·단체(타지자체 포함) 현장활동 지원 연계
	시 자원봉사 업무담당 팀원	▶ 자원봉사활동 현황·통계관리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연계 ▶ 재난현장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원단 관련 홍보 및 대응
활동관리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 지원·관리 총괄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지원 총괄 ▶ 봉사활동 기록 및 인정(시간, 확인서 발급 등) 총괄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항 발급 총괄 ▶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상담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 봉사활동 기록 및 인정(시간, 확인서 발급 등)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급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비고

-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0-446호

2020~202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수산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2020~202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2020. 6. 5.(금)까지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033) 570-3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발계획 수면 도면은 삼척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6일

삼척시장

□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신청내용					승인여부		승인조건 및 불승인 사유
수면번호	어업별	위치(지선)	면적(건/ha)	개발사유	승인(건/ha)	불승인(건/ha)	
1	정치망	교동지선	40.0	재개발(기간만료)	40.0	-	- 기존 정치망어업(제00-2호)을 동일수면·면적으로 개발
2	정치망	하맹방리지선	30.0	재개발(기간만료)	30.0	-	- 기존 정치망어업(제00-3호)을 동일수면·면적으로 개발 - 어업분쟁 해결 후 개발(조건부 승인)
3	정치망	하맹방리지선	57.5	재개발(기간만료)	57.5	-	- 기존 정치망어업(제00-6호)을 동일수면·면적으로 개발 * 포스파워 개발사업 관련
4	정치망	하맹방리지선	4.2	재개발(기간만료)	4.2	-	- 기존 정치망어업(제00-7호)을 동일수면·면적으로 개발 * 포스파워 개발사업 관련
5	정치망	교동지선	24.0	재개발(기간만료)	24.0	-	- 기존 정치망어업(제05-8호)을 동일수면·면적으로 개발 *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관련

□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삼척시 공고 제2020-44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0.05.01. ~ 2020.05.15.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0.05.16.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진○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03	
	목조/아연 (1층:46.94㎡ 단독주택, 1층9.9㎡ 참고)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5. 01.

삼 척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0-450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1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삼척시장

제21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세무과)
2. 202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3.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4.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략사업과)
5.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광정책과)
6. 삼척시 도계 유리게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자원개발과)
7.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과)
8.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과)
9.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10.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
11.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난안전과)
12.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
13.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
14.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교통행정과)
15.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상수도사업소)
16.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

삼척시공고 제2020-462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보가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20.5.8. ~ 2020. 5.29.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삼척시	미로	하거노	223-2	대	1,117	최 * 현 외 2인	5*.0*.2*		최 * 현 외 2인
삼척시	원덕	옥원	125-32	대	268	민 * 자 외 1인	4*.0*.1*		민 * 자 외 1인
삼척시	근덕	초곡	214-1	대	347	박 * 교 외 3인	3*.1*.3*		박 * 교 외 3인

2020년 5월 8일

삼척시장